



[2017.1.28.] [27806 , 2017.1.26.,]

() 044 - 201 - 6793

1 () 「 . 」 . <
2010.6.28.>

1 2() 「 . 」 (" ") 2 3 1
(" ") .
, 2 3 5 (" ") 10
31 . . . (" .
") . 12 31 . .
. (" . ") .

가

. 2 3 6 2 ,
12 31 .
. 6 .

[2013.9.9.]

2 (가) 8 1 가
가 .
. . (.) . < 2010.6.28.,
2013.9.9., 2014.2.11.>

1. (가)
2. ()
3. 9 2

8 1 " " .< 2010.6.28., 2011.12.8., 2016.8.11.>

1. 「 」 3 2 3 50
2. 「 」 2 4 50
3. 「 . 」 2 「 」 2 50
4. 「 」 2 3 50
5. 「 」 36 1 1 가 51 3
2 ()

6. 「 」 34 1 3 100
50

7. 「 」 2 3 100
50

가 . 가 . 가 .< 2010.6.28., 2014.2.11.>
8 3 가 가 .<
2009.6.30., 2010.6.28., 2011.11.16., 2013.9.9.>

1. 「 」 2 8

2. 「 」 30

3. 「 」 4

4. 1 3 . 가

3 () 21 2 2

1. 「 」 (" ")
2.

1 , .

[2014.2.11.]

4 () 30

- 1. 가
- 2.
- 3.

5 (.) 31 1

< 2010.6.28., 2013.3.23.>

- 1. 가
- 2. , , 가
- 3.
- 4. , 가 가
- 5.
- 6. .
- 7. 1 1

31 1 .< 2008.2.29.>

- 1. 가
- 2.

3. 가
4. 31 1 가 (車臺)

5. (地上操業用)

6.

7.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31 4 2 49
1 20 1 30
[[2014.2.11.](#)]

6 () 33 1

1.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가 33 2
6 1 2

8 () 35

1.

2.

9 () 39 1
(WECPNL) 90 , 75
1

39 2 「 」 2 4

.< [2010.9.17.](#)>

9 2() 44 1 " 「 」 17

[2011.10.28.](#)>

1. 「 」 17

2. 1

[[2010.6.28.](#)]

10 () 45 1
. < [2009.1.6.](#), [2013.3.18.](#)>

1. 1 .
 2.
 가. 「 가 」 23 16 2 .
 . 「 」 38 2 18 3 2 1

11 () 48 4 " " . <
[2010.6.28., 2017.1.26.>](#)

1.
 2.
 3. 「 」 .
 4. 4 2 1

12 () 54 1 , 31
 2 , 33 1 2
 , 44 1
 . < [2009.1.6., 2010.6.28., 2014.2.11.>](#)

1. 31 1 2 ,
 2. 32 2 . (受理)
 3. <[2010.6.28.>](#)
 4. 34 1 2
 5. 47 1 4
 6. 51 3
 7. 60 2 9 10 .
 54 1 . <

[2009.1.6.>](#)
 1. <[2009.2.13.>](#)
 2. 47 1 , 47 1 4 .
 3. 2 4 4 가

13 () . 12
 . . . 16 17
 가 , .
 < [2010.6.28., 2014.2.11.>](#)

14 () 54 2 . <
[2009.2.13., 2009.12.24., 2010.6.28., 2014.2.11.>](#)
 1. 3 1 .
 2. 31 1
 3. <[2014.2.11.>](#)
 54 2 46 「 」 59
 . < [2009.2.13., 2010.6.28., 2012.7.20.>](#)

1 2

.< 2010.6.28.>

[2010.6.28.]

14 2() 3 (3)

- 1. 2 가 : 2014 1 1
- 2. 10 1 : 2014 1 1

[2013.12.30.]

15 () 60 1 2 2 .< 2010.6.28.>

[2009.1.6.]

< 20242 ,2007.9.6.>

1 () .

2 () 1992 7 1 (13680)

13680 .

12 1 2 .

3 () 1997 9 8 (15474)

4 () 2000 4 22 (16796)

16796 .

12 1

5 () 「 . 」

가

< 20680 ,2008.2.29.>

1 () .

2

3 ()

5 2 1 " " " .

⑱

< 21253 ,2009.1.6.>

.

< 21323 ,2009.2.13.>

.

< 21590 ,2009.6.30.>

1 () 2009 7 1 . < >
2 9

< 21904 ,2009.12.24.>

1 () 2010 1 1 .
2 4

5 ()

.

14 1 " 「 」 " " 「 」 "

⑳

6

< 22224 ,2010.6.28.>

1 () 2010 7 1 .
2 () 2 2 6 7

3 ()

4 ()

1 5 4) " 「 . 」" " 「 . 」" .

1 3 , 4 1) 2) " 「 . 」" " 「 . 」" .

4 2 (6) " 「 . 」" " 「 . 」" .

22 7 1 " 「 . 」" " 「 . 」" .
 5 () 「 . 」
 가 「 . 」

< 22387 ,2010.9.17.>

1 () 2010 9 23 .
 2
 3 ()
 .
 9 3
 39 2 「 」 2 4
 .

< 23267 ,2011.10.28.>

1 () 2011 10 29 .
 2 ()
 .
 9 2 1 " 「 」" " 「
 」" .

⑱

3

< 23297 ,2011.11.16.>

1 () . < >
 2 ()
 .
 2 4 1 " 「 」 2 5 " 「 」 2
 8 " .

⑳

< 23356 ,2011.12.8.>

1 () 2011 12 8 . < >

2 () ㉓

㉔ .
2 2 7 " " " " .

㉕ <54>

< 23967 ,2012.7.20.>

1 () 2012 7 22 . < >

2 ()

.

14 2 " 「 」 38 " " 「 」 59 " .

㉖

3

< 24407 ,2013.3.18.>

< 24451 ,2013.3.23.>

1 ()

2

3 ()

.

5 1 2 " " " " .

㉗

4

< 24719 ,2013.9.9.>

2013 9 23 , 1 3 2 2 2014
1 1 , 1 2 2 2 2015 1 1 .

< 25050 ,2013.12.30.>

2014 1 1 . < >

< 25166 ,2014.2.11.>

1 () 2014 2 14 . , 3 2014 5 14 .
2 () 14 1 3

12 1

< 27444 ,2016.8.11.>

1 () 2016 8 12 .
2 6

7 () ④①

④② .

2 2 4 " 「 」 2 2 " " 「 」 2 3 " .

④③ <75>

8

< 27751 ,2016.12.30.>

1 () 2017 1 1 . < >
2 12

< 27806 ,2017.1.26.>

1 () 2017 1 28 .

2

3 ()

.

11 3 " 「 」 " " 「 」 " .

4

[별표 1] <개정 2016. 12. 30.>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지정기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1.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기관	2명 이상의 기술직과 2명 이상의 기능직을 갖춘 것	<p>가. 면적이 900㎡ 이상(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30m 이상)인 검사장을 갖춘 것</p> <p>나. 다음의 장비를 갖춘 것. 다만, 4)와 5)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Hz 이상 16kHz 이하) 1대 이상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0Hz 이상 500Hz 이하 나) 1,000Hz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5) 주파수분석장비: 50Hz 이상 8,000Hz 이하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높이 10m 이상)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6대 이상 7)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발생장치 1대 이상
2.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관		<p>가. 배경소음이 20dB(A)이하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향실(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의 검사장을 갖춘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향실(반무향실): KS A ISO 3745 부속서 A 또는 부속서B의 무향실(반무향실) 적합성 기준 2) 잔향실: KS A ISO 3741 부속서A의 잔향실 적합성 기준 <p>나. 다음의 장비를 갖춘 것. 다만, 4)와 5)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Hz 이상 16kHz 이하) 1대 이상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p>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가) 200Hz 이상 500Hz 이하 나) 1,000Hz</p> <p>3) 마이크로폰 6대 이상</p> <p>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p> <p>5) 주파수분석장비: 50Hz 이상 8,000Hz 이하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p> <p>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p> <p>7) 평가기준음원 발생장치 1대 이상</p>
<p>3. 휴대용음향기소음도 검사기관</p>	<p>가. 배경소음이 45dB(A) 이하인 검사장을 갖출 것</p> <p>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3)과 4)의 장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1)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가) 200Hz 이상 500Hz 이하 나) 1,000Hz</p> <p>2) 마이크로폰 2대 이상</p> <p>3) 녹음 및 기록장치(2채널 이상) 1대 이상</p> <p>4) 주파수분석장비: 50Hz 이상 8,000Hz 이하의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p> <p>5) 인체 귀 모형 측정시스템(Head and Torso System) 1대 이상</p>

비고: 기술인력란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음·진동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소음·진동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기능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환경 및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별표 2] <개정 2013.9.9> [시행일:2014.1.1] 제2호과목
 [시행일:2015.1.1] 제2호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	60	80	100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	100	140	200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경우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20	60	100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60	120	200	
바.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100	140	200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60	80	100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4			
	100	140	200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			
	100	140	200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5호			
	10	10	10	
차.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6호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 (A) 미만 초과한 경우	20	20	20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dB	60	60	60	

(A) 이상 4dB(A) 미만 초과한 경우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dB (A) 이상 초과하거나 경 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 한 경우		100	100	100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 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100	100	100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60	60
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	10	10
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 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포지를 부착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3호	75	150	300
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 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4호	75	150	300
하.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 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8호	60	80	100
거.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9호	60	80	100
너.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법 제60조제2항제10호	60	80	100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